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 2. 8 선고 2019가단6645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중소기업진흥공단

피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준

변 론 종 결 2022. 1. 18.

판 결 선 고 2022. 2.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3. 체결된 증여계약을 57,940,212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B에게 별지2 기재 배당금지급채권 중 57,940,012원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양도통지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7. 6. 주식회사 C와 사이에, ‘대출금액: 50,000,000원, 대출기간: 5년(2년 거치), 이자: 연 1.98%, 지연배상금율: 연 12%’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B은 대출계약에 따른 위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B은 2019. 3. 13.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9. 3. 1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B에 대하여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원리금 채권이 있었고, B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21. 1. 21. 피고에게 소유자(4순위)임을 이유로 68,260,162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현재 원고의 B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은 57,940,212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B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설령 위 증여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과도한 재산분할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 중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57,940,212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를 구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B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채권양도통지를 할 것을 구한다.

3.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 전인 2019. 1. 3. B과 협의이혼의 합의를 하고, 2019. 6. 24. 협의이혼을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B로부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9816 판결 등 참조). 이 때 채무자의 재산분할이 상당한지 여부는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한 재산분할의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하되, 이혼한 당사자 일방의 이익과 채권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재산분할이 분할자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것인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 5,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08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의류판매업 등을 하면서 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고, 그중 B에게 교부한 금액이 적어도 146,253,770원에 이르는 점, ② B은 2016. 7. 11.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당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은 340,000,000원이었는데, 위 매매대금은 E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175,000,000원과 피고가 2008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B에게 교부한 금원 등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B은 2017. 12. 2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그 매매대금은 9,738,000원에 불과하였던 점, ④ 원고는 B과 협의이혼하면서 양육비로 월 400,000원만을 지급받고 홀로 자녀를 양육하기로 하였는바, 피고는

양육비 지급의 의미를 포함하여 B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B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지상